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2, pp. 543-566.

논문접수일 2016. 01. 30.
심사완료일 2016. 02. 18.
게재확정일 2016. 02. 19.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절차’에 관한 고찰*

김 용 일**

-
- I. 서 론
 - II. 취소신청
 - III. 특별위원회의 구성
 - IV. 취소결정
 - V. 결 론
-

주제어 : ICSID 협약, ICSID 중재판정, 특별위원회, 취소신청, 취소결정

I. 서 론

2012년 11월 2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승인 부당 지연, 외환은행 지분과 스타타워 매각 수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¹⁾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E-Mail : senatorkyi@hanmail.net

오원석 교수님 정년퇴직 기념 논문집에 이 논문을 게재하게 되어 영광이며 선생님께서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1)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으로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하여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 협정을 근거로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이하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현재, 3차 심리가 종결되었으며 올 6월 최종 심리 후 중재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²⁾

이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게 불리한 중재판정이 내려질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불복 수단은 ICSID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다. 요컨대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ICSID 협약³⁾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소사유를 근거로 ICSID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ICSID 내의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에 의해 취소된 중재판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⁴⁾ ICSID 중재는 다른 분쟁해결제도와는 달리 자족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 법원들은 ICSID 중재판정을 재심할 권한이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CSID 외의 투자중재판정은 국제상사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중재지 국가의 법원에 의한 사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제Ⅱ장에서는 취소신청 요건, 부분 취소, 취소신청의 포기를 중심으로 취소신청 단계에서의 유의점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칙, 특별위원의 부적격 및 권한·기능을 고찰한다. 나아가 제Ⅳ장에서는 취소결정 요건, 효과 및 취소결정에 대한 재심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동안 ICSID 중재의 취소제도에 관하여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기존 논문들은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의 취소사유를 근거로 ICSID에 신청된 취소 사건들에 대한 사례분석, 취소제도의 한계 및 운용방안을 주로 다룬 반면,⁵⁾ 본 논문은 취소절차의 전 단계(취소신청, 특별위원회 구성, 취소결정)에서

2)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ICSID Case No. ARB/12/37). 이 사건의 외, 한국 정부를 당사자로 심리중인 *Hanocal Holding B.V. and IPIC International B.V.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5/17) 사건이 있다. 그동안 ICSID를 통한 국제투자중재는 1972년 1건을 시작으로 1996년까지는 연간 1~4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1997년 10건을 포함,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3년 이후에는 매년 20~50건 정도의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현재까지 549건에 이르고 있다. <<https://icsid.worldbank.org/>>.

3)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으로 1966년 10월 14일 발효되었으며 2016년 1월 현재 159개국이 서명, 150개국이 비준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및 그 자매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1955년 IBRD, 1961년 IDA, 1964년 IFC, 1967년 ICSID에 가입하였으며, 1988년 MIGA의 가맹국으로 참여하였다.

4) 2015년까지 ICSID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취소신청 사건 총 67건 중에서 판정 전체 또는 부분 취소 14건, 신청 기각 32건, 계속 중이 2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https://icsid.worldbank.org/>>.

5) ICSID 중재의 취소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김상찬, “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오원석·이기옥·김용일, “ICSID 중재의 취소제도에 관한 제 고찰”,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4; 김용일, “ICSID 중재판정의 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점을 협약의 해석과 ICSID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II. 취소신청

1. 신청 요건

협약 제52조에 의하여 취소신청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⁶⁾ 다만, 중재인의 부패(腐敗, corruption)를 이유로 취소신청을 할 때에는 부패를 발견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기한은 당사자가 취소절차를 개시하는 것과 관련되며 일단 취소절차가 개시되면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협약에서 기한을 정한 것은 기한이 경과된 후 취소신청이 제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확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⁷⁾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해석(interpretation)⁸⁾ 또는 수정(revision)⁹⁾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을 취소신청의 기산일로 본다. ICSID 중재규칙¹⁰⁾ 제50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 시, i)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심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3; 박건도, “ICSID 협약 상 취소제도의 성격 및 취소사유에 관한 소고: 명백한 월권 및 이유 미기재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참조.

6)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은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ICSID 기관이나 제3자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나아가 투자유치국 또는 투자자의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누가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자격을 갖는지는 협약 제25조의 관할권(jurisdictions) 문제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7) 강병근, ICSID 중재제도 연구, 법무부, 2006, p. 241 참조.

8) ICSID 협약 제50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의미 또는 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ICSID 사무총장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해석은 ‘판정의 의미 또는 범위’의 해석에 국한될 뿐이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판정의 본안(merits)에 대한 어떠한 구제나 재검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판정의 확정력을 훼손하지도 않는다(L. Reed, et. al., *Guide to ICSID Arbitration*, Wolters Kluwer, 2011, p. 159).

9) ICSID 협약 제51조 제1항은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 ICSID 사무총장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재판정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다만, 판정이 내려졌을 당시에 이러한 사실이 중재판정부와 신청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이 알지 못하였음이 그의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Ibid.*, p.161).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 ii) 취소신청과 관련된 중재판정을 명시할 것, iii) 취소 신청 일자를 기재할 것, iv) 협약 제52조 제1항에 제한적으로 명시된 취소신청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¹¹⁾ 또한 이러한 취소신청에는 절차이행을 위한 수수료¹²⁾ 납부가 요구된다. 중재절차규칙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기한 경과 후 취소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등록하지 않을 것이며, 신청서를 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특별위원회가 해당 신청서의 기한 내 제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사무총장은 중재 당사자가 취소를 신청하였는지 여부 및 신청서가 ICSID 중재규칙 제50조 제1항의 취소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Schreuer는 취소신청인이 신청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무총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¹³⁾ 취소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무총장은 양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신청서와 제반 서류의 사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¹⁴⁾

ICSID 사무총장이 신청서를 등록하면 특별위원회는 협약 제52조 제1항에 열거된 제한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원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각 당사자는 다음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¹⁵⁾

-
- 10) ICSID는 ICSID 중재와 조정을 위하여 협약 외, 다음과 같이 1개의 규정과 3개의 규칙을 두고 있다.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egulations’ (행정 및 재정규정), ‘Rules of Procedure for the Institution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Institution Rules, 중재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for Conciliation Proceedings’ (Conciliation Rules, 조정규칙),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Arbitration Rules, 중재규칙).
 - 11) ICSID, “Background Paper on Annulment for the Administrative Council of ICSID”, Aug.10, 2012, p.19. 취소신청 요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은, *Anco Asia Corporation and others v. Indonesia*, ICSID Case No. ARB/81/1,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16 May 1986), ICSID Reports 1 (1993); *Continental Casualty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Continental Casualty) ICSID Case No. ARB/03/9 참조.
 - 12) ICSID 행정 및 재정규정 제16조가 정한 바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되지 않는다.
 - 13) C. Schreuer et al, *The ICSID Convention: A Commentary on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930.
 - 14) ICSID 중재규칙 제50조 제2항.
 - 15)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원문 : (1)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grounds: (a) that the Tribunal was not properly constituted; (b) that the Tribunal has manifestly exceeded its powers; (c) that there was corruption on the part of a member of the Tribunal; (d) that there has been a serious departure from a fundamental rule of procedure; or (e) that the award has failed to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 i) 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ii) 판정부가 명백히 그 권한을 유월(逾越)한 경우
- iii) 판정부의 중재인에 부패(腐敗)가 있는 경우
- iv)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 v) 판정문에 그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취소사유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사유는 ii)의 명백한 권한 유월, iv)의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 v)의 이유 불비(不備)이다. 현재까지 특별위원회에서 i)의 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 iii)의 중재인 부패가 취소사유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¹⁶⁾¹⁷⁾

2. 부분 취소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부분 취소신청 가능성을 표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ICSID 협약 초안 제정 당시, 인도 대표는 협약 제52조 제1항에 ‘또한 이의 어떠한 부분도’(or any part of it)라는 구절을 삽입하여 부분 취소의 범제화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대표는 ‘취소사유 대부분이 중재판정 전체를 취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결국 부분 취소신청 가능성을 표면적으로 포함하는 인도 대표의 제안은 다수결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¹⁸⁾

이에 반해 협약 제52조 제3항에서는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중재판정 자체 또는 그의 어느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¹⁹⁾ 이러한 조항 내 표현의 차이에 대해 몇몇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주석학자들은 ‘위원회는 중재판정을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당사

16) R. D. Bishop & S. M. Marchili, *Annulment under the ICSID Convention*, Oxford, 2012, p. 283; 이기욱,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5. 2, p. 63 재인용. ICSID 취소신청 사건에서 특별위원회가 다룬 주요 취소사유에 관하여 상세히는, 전계논문, pp. 73~77 참조.

17) 만약 당사자가 중재진행 단계에서 취소사유를 발견하면 중재판정 전에 결함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는데, 우선 중재판정부에게 스스로 결함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또한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진 이후에 제기하는 일방 당사자의 취소신청을 피할 수 있게 된다. A. K. Bjorklund, “The Continuing Appeal of Annulment: Lessons from Amco Asia and CEM”, in T. J. Weiler(e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Leading Cases from the ICSID, NAFTA, Bilateral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London: Cameron May, 2005, p. 496.

18) ICSID, *History of the ICSID Convention*, Vol. II, ICSID Publication, 2009, pp. 850~852 참조.

19) ICSID 협약 제52조 제3항 원문 : The Committee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nnul the award or any part thereof on any of the grounds set forth in paragraph (1).

자들은 중재판정의 부분 취소만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⁰⁾ 반면 다른 주석학자들은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초안 일부 구절(또한 이의 어떠한 부분도)의 추가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중재판정의 부분 취소만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판정 전체의 취소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²¹⁾ 요컨대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무상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중재판정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아래의 사례에서도 특별위원회는 부분 취소신청을 수용하고 있다.

먼저 *MINE v. Guinea* 사건에서 특별위원회는 협약 제52조 제3항에 의해 ‘위원회가 중재판정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부분 취소신청은 수용가능하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다. 결국 특별위원회는 취소신청 사항에 대해서만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고 취소가 신청되지 않은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중재판정의 일부분이 취소되면 다른 부분도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기나가 중재에서 진 당사자가 아니고, 따라서 비용에 관한 중재판정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²²⁾ 이에 대해 Caron은 취소신청 당사자가 취소신청 시, 취소의 범위를 한정짓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MINE*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그는 *MINE* 특별위원회가 부분 취소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중재판정 전체에 대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의 의무를 혼동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취소신청 당사자인 *MINE*과 특별위원회 모두 취소절차를 혼란스럽게 이끌었다고 주장하였다.²³⁾²⁴⁾

또한 *Amco v. Indonesia* 사건에서 인도네시아는 중재판정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신청하였다. 첫 번째 특별위원회는 중재판정 전체를 취소하면서도 이러한 취소는

20) *Compañía de Aguas del Aconquija S.A and Vivendi Universa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2); D. D. Caron, “Reputation and Reality in the ICSID Annulment Process: Understanding the Distinction Between Annulment and Appeal”(1992) 7 ICSID *Rev-FILJ* 21, 36; C. I. Suárez Anzorena, “*Vivendi v. Argentina*: on the Admissibility of Requests for Partial Annulment and the Ground of a Manifest Excess of Power” in E. Gaillard and Y. Banifatemi(eds), *Annulment of ICSID Awards*, New York: Juris Publishing, 2004, pp. 145~146.

21) A. Broches, “Observations on the Finality of ICSID Award”, 6 ICSID *Rev-FILJ.*, 1991, p. 321, p. 333; C. Schreuer et al, *op. cit.*, p. 1042.

22) *Maritime International Nominees Establishment v. Republic of Guinea* (ICSID Case No. ARB/84/4), Decision on Annulment, 4 ICSID Reports 79, 1989, para. 4.07.

23) D. D. Caron, *op. cit.*, pp. 36~37 참조.

24) 부분 취소의 가능성과 관련한 협약의 불명료성에 관하여 상세히는, W. M. Reisman, “The Breakdown of the Control Mechanism in ICSID Arbitration”, *Duke Law Journal* 739, 1989, pp. 800~803 참조.

인도네시아 균경의 호텔 강제접수 행위의 불법성이 *Amco*의 배상받을 권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²⁵⁾ 새로운 중재판정부는 특별위원회가 취소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면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의 기판력(既判力)을 인정하였다.²⁶⁾ 나아가 취소된 중재판정의 일부분이 논리적으로 다른 부분의 전제가 되는 경우나 중재판정의 일부분이 취소됨으로써 다른 부분이 실제로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일부 취소는 다른 부분 또는 전체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²⁷⁾

MINE 및 *Amco* 사건과는 달리, *Vivendi I* 사건의 특별위원회는 “취소신청자가 부분 취소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취소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시하였다.²⁸⁾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하여도 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다른 중재판정 부분까지 취소를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²⁹⁾³⁰⁾

3. 포기

취소신청 권리의 사전 포기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석학자들의 의견은 나뉘진다.³¹⁾ 일부 저자들은 취소신청 권리 포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가능성을

25) *Amco Aisa Corporation and thers v. Indonesia(Amco I)* ICSID Case No. ARB/81/1, paras. 89~98 참조.

26) *Amco Asia Corporation and others v. Indonesia (Amco II)* ICSID Case No. ARB/81/1, para. 1.19 참조.

27) *Klöckner v. Cameroon* 사건에서 카메룬 정부가 중재판정의 전체 취소를 신청한데 대하여 특별위원회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을 근거로 제기된 취소신청이 다른 부분과 구분될 수 있는 경우, 중재판정 일부에 대해서 취소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다. *Klöckner Industrie-Anlagen GmbH and others v. United Republic of Cameroon and Societe camerounaise des Engrais (Klöckner I)* ICSID Case No. ARB/81/2, para. 127 참조.

28)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취소사유가 제정된 것은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별위원회를 위한 것이지, 신청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취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중재판정 전체 혹은 부분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의 요청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이는 협약 제52조 제1항과 제52조 제3항에 각기 다른 표현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Compañía de Aguas del Aconquija S.A and Vivendi Universa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2) (*Vivendi I*, Decision on annulment), paras. 68~70.

29) C. I. Suárez Anzorena, *op. cit.*, p. 136.

30) 부분 취소와는 달리 ICSID 중재에서 ‘취소에 대한 반소’(counterclaims)는 ICSID 협약과 중재 규칙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반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중재판정부에 부여하는 협약 제46조는 취소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지, R. D. Bishop & S. M. Marchili, *op. cit.*, p. 218.

인정한다. 그들은 ICSID 중재규칙과 ICSID 협약 제44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원칙적으로 취소신청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²⁾ 하지만 권리의 사전 포기가 당사자들의 단순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닌, ICSID 중재의 전반적 체계 유지를 위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부 주석학자들은 당사자가 취소사유 가운데 관할권, 부패, 부적절한 중재판정부 구성을 사유로 하는 경우 취소신청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³³⁾ 또한 Schreuer는 협약에서 제공하는 취소사유를 근거로 제기할 수 있는 취소신청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취소신청 권리는 ICSID의 완전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는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요건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사전에 권리를 포기하는 당사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³⁴⁾ 또 다른 저자는 어떠한 협약에서도 당사자들이 취소신청 권리를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며, 취소신청 권리는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³⁵⁾ 같은 맥락에서 Broches는 협약 제44조³⁶⁾의 해석상 당사자들은 그들의 취소신청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³⁷⁾ Schreuer는 ICSID 협약은 취소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포기하는 권리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
- 31) 취소신청의 포기 가능성 여부에 대해 상세히는, G.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ases and Materials*,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2011, p. 1047 이하 참조.
- 32) W. M. Reisman, *op. cit.*: C. M. Koa,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Dispute Resolution: Conciliating and Arbitrating with China Throug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24,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1991, p. 439 이하; K. S. Jacob, "Reinvigorating ICSID with a New Mission and with Renewed Respect for Party Autonomy", 33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3, p. 123 이하 참조.
- 33) G. R. Delaume, "The Finality of Arbitration Involving States: Recent Developments", 5(1)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989, p.5, p.15.
- 34) G. R. Delaume, "Reflec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12(1)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5, 1995, p. 15; Schreuer, *op. cit.*, p. 919; G. Verhoosel, "Annulment and Enforcement Review of Treaty Awards: To ICSID or Not to ICSID?", in *50 years of the New York Convention: ICCA International Arbitration Conference*, ICCA Congress Series No 14, A. J. van den Berg(ed), Alphen aan den Rijn: Kluwer International Law, 2009, p. 289.
- 35) C. F. Amerasinghe, "Submiss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1973~1974, p. 211, p. 245.
- 36) ICSID 협약 제44조 원문 : Any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nd, except a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arbitration. If any question of procedure arises which is not covered by this Section or the Arbitration Rules or any rules agreed by the parties, the Tribunal shall decide the question.
- 37) A. Broches,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f 1965 Explanatory Notes and Survey of its Application", in A. J. van den Berg(e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 XVIII, 1993, p. 627.

고 언급하였다.³⁸⁾ 요컨대 당사자는 장래에 ICSID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이 있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에 취소신청 권리의 포기를 명시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든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ICSID 외의 다른 기관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ICSID 협약이 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신청 권리의 포기는 명백히 잘못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을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Ⅲ. 특별위원회의 구성

1. 구성에 관한 규칙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원 절차와는 달리, 취소심리 단계에서는 ICSID 운영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의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한다. 협약 초안 제정 당시, 일부 입안자들은 당사자가 직접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대다수 국가의 대표들은 이 제안에 반대하였다.³⁹⁾ 중재인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의 차이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제한적이고 기술적인 임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은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적정하지 여부에 관하여 재검토 할 수 없으며, 단지 협약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취소사유만을 근거로 원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⁴⁰⁾ 이에 대하여 일부 주석학자는 당사자들이 선정하지 않은 세 명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원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자신들의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들에게 가졌던 합리적인 기대를 저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⁴¹⁾

38) C. Schreuer et al, *op. cit.*, pp. 918-919 참조.

39) ICSID, *op. cit.*, p. 855.

40) J. Paulsson, "ICSID's Achievements and Prospects", *ICSID Rev-FILJ.*, 1991, p. 392.

41) 이에 대해 Michael Reisman는 "만약 ICSID가 중재판정의 확정력과 함께 정확성으로까지 기능의 확장을 추구한다면 이는 최초 중재판정부로부터 특별위원회로 권한이 재분배될 수 있으며, 나아가 ICSID 협약 체결국들이 사전에 선정한 중재인단의 전체 권한이 ICSID 운영이사회 의장이 선정한 새로운 3명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W. M. Reisman, "Reflection on the Control Mechanism of the ICSID System" in E. G. Aillard(ed), *The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Jurist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e*, 2010, pp. 521~522; J. Paulsson, *op. cit.*, p. 380).

ICSID 협약 제5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어느 위원도 판정을 내린 판정부의 중재인이어서는 아니 되며 분쟁 당사국의 어느 국가에 의해 중재위원단으로 지명되지 아니하였어야 하고, 또한 동일한 분쟁의 조정자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이는 중재절차 전체에서 취소절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⁴²⁾ 실무상 ICSID 사무총장은 운영이사회 의장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며, 당사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추천된 3명의 위원에 대한 이력서를 첨부하여 추천 관련 사항을 통지한다. 이후 사무총장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에 위원들이 지명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다시 알린다.⁴³⁾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직접 혹은 화상 회의를 통하여 당사자들과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회의에서 당사자들과 위원들은 취소심리 진행일정 및 다른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⁴⁴⁾

2. 위원의 부적격

중재판정의 취소를 다루고 있는 ICSID 협약과 ICSID 중재규칙은 특별위원회 위원의 부적격 주장에 대한 심사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단지 협약 제52조 제4항에서 “제41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및 제54조와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은 위원회의 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⁴⁵⁾ 결국 제52조 제4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당사자들은 특별위원회 위원의 부적격 요청을 제기할 수 없다. ICSID 중재규칙은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다. 중재규칙 제53조는 취소절차에 적용되는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을 다루는바, “이러한 절차규칙들의 규정들은 중재판정의 해석, 수정, 취소 그리고 중재판정부 또는 특별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에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⁴⁶⁾ 동 규정의 ‘이러한 절차규칙들’이라는 표현은 ICSID 중재규칙 전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재인의 부적격을 다룬

42) L. Reed et al., *Guide to ICSID Arbitration*, Wolters Kluwer, 2011, p. 175; 김용일, “ICSID 중재판정의 ‘집행정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p. 69; 이기욱, 전제논문, p. 67 재인용.

43) ICSID 중재규칙 제52조 제2항.

44) R. D. Bishop & S. M. Marchili, *op. cit.*, p. 222.

45) ICSID 협약 제52조 제4항 원문 : The provisions of Articles 41~45, 48, 49, 53 and 54, and of Chapters VI and VII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ceedings before the Committee.

46) ICSID 중재규칙 제53조 원문 : The provisions of these Rul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y procedur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revision, or annulment of an award and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or Committee.

ICSID 절차규칙 제9조 또한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ICSID 중재규칙 전체를 취소절차에 적용한다면, 취소절차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ICSID 협약 제52조 제4항은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은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를 무한정으로 신청함으로써 ICSID 중재판정의 종국성(finality)을 약화시킬 것이다.⁴⁷⁾

부적격 요청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대표적으로 두 사건이 있는데, 먼저 *Vivendi I* 사건에서 아르헨티나는 특별위원회 위원 한 명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비록 협약 제52조 제4항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ICSID 절차규칙과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의 부적격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⁴⁸⁾ 이는 ICSID 중재규칙 제53조를 준용하여 협약 조항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협약 제52조 제4항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부적격 심사요청 자체에 대한 결정에서 특별위원회는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로펌과 청구인(중재 신청인)의 자회사 사이의 법률 파트너 관계는 ICSID 협약 제57조에서 요구하는 ‘자질의 명백한 결격’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 부적격 심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⁴⁹⁾

최근 *Nation Energy* 사건에서도 취소신청인은 협약 제52조 제3항에 따라 운영이 사회 의장이 지명한 두 명의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해 부적격심사요청을 제기하였다.⁵⁰⁾ 그 중 한 명은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바로 위원직을 사임하였고, 며칠 뒤 새로운 위원이 그를 대신하여 지명을 받았다.⁵¹⁾ 위원직을 사임하지 않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한 부적격 심사요청은 협약 제57조와 제14조 제1항, 그리고 i) 피청구인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 특별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로펌에 7년 이상 함께 근무한 것, ii) 위원회 위원이 i)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것을 근거로 심리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는 변호사와 특별위원회 위원의 관계가 당해 사건에서 독립적이고 공평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이어지기가 어렵고, i)의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 또한 ICSID 협약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격 심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⁵²⁾

47) R. D. Bishop & S. M. Marchili, *op. cit.*, p. 223.

48) *Compañía de Aguas del Aconquija SA and Vivendi Universal S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the Challenge to the President of the Committee, Oct. 3, 2001, para. 3.

49) 앞의 *Vivendi I*, Decision on the Challenge to the President, paras. 14~28 참조.

50) *Nations Energy Corporation et al v Panama*, Decision on the Request for Disqualification of Mr. Stanimir A Alexandrov(ICSID Case No ARB/06/19), 7 September 2011, paras. 1~6.

51) 앞의 *Nations Energy Corporation et al v Panama*, Decision on the Request for Disqualification, paras. 7~12 참조.

앞의 *Vivendi I*와 마찬가지로 *Nation Energy* 사건의 특별위원회 결정은 다소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모든 ICSID 중재규칙을 취소절차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ICSID 중재의 중국성과 같은 기본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면에 위원의 부적격 심사요청을 배제하는 것 또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Fraport* 사건은 위원의 부적격 심사요청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주목할 만한 사례인데, 필리핀은 취소절차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주장하면서 *Fraport* 변호인단의 구성원(변호사) 한 명에 대해 부적격을 요청하였다.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주된 사안은 특별위원회가 이 쟁점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는 절차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당사자들의 법률 대리인 영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가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⁵³⁾

3.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특별위원회는 크게 관할권, 임시적 조치, 취소결정, 비용배분 등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갖는다. ICSID 협약 제52조 제4항에 의해 협약 제41조에서 규정하는 ICSID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취소절차에 준용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주어진 권한으로 취소신청이 협약 제52조와 중재규칙 제50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jurisdiction) 결정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협약 제52조 제4항의 해석상 협약 제25조를 취소절차에 준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할권 결정과 마찬가지로 임시적 조치(provisional measures)와 관련하여 협약 제52조 제4항은 협약 제47조(54)를 취소절차에 준용하는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임시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⁵⁵⁾

52) *Ibid.*, paras. 41~45 참조.

53) *Fraport AG Frankfurt Airport Services Worldwide v.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CSID Case No ARB/03/25), Decision on Application for Disqualification of Counsel, 18 September 2008, paras. 37.

54) ICSID 중재규칙 제53조 원문 : Except a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Tribunal may, if it considers that the circumstances so require, recommend any provisional measures which should be taken to preserve the respective rights of either party.

55) ICSID 협약 초안에는 “특별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임시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였다(ICSID, *History of the ICSID Convention*, Vol. I, ICSID Publication, 2006, p. 238).

임시적 조치와 관련한 사례로, 최근 *Libananco* 사건에서 취소신청인은 특별위원회가 ICSID 중재규칙 제39조와 제53조에 따라 임시적 조치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⁶⁾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협약 제52조 제4항이 취소절차 준용 조항으로 제47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CSID 협약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임시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특별위원회는 “ICSID 협약 제52조 제4항이 제47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시적 조치와 관련하여, 제52조 제4항의 ‘특정 조항 부재’에도 불구하고 ICSID 중재규칙 제39조와 제53조에 따라 ICSID 협약 제44조가 준용될 수 있는지는 적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임시적 조치 권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⁵⁷⁾ 결국 임시적 조치에 대한 요청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다뤄야 할 쟁점 사안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특별위원회는 중재판정 전체 또는 그의 어떠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원 중재판정뿐만 아니라 취소결정이 내려지고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도 취소대상이 된다. 화해합의를 기록한 중재판정도 취소대상이 되지만 협약 제52조 제1항의 취소사유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정결정도 취소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석결정은 취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 자체도 또 다른 특별위원회의 취소대상이 되지 않는다.⁵⁸⁾

협약 제52조 제4항은 비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협약 제7장을 취소절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비용과 수수료 배분에 관한 결정을 해오고 있다. 대부분의 특별위원회는 ICSID 중재와 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른 비용을 각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부담시켰다.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근거로 이를 정당화하였는데, 먼저 *Klöckner* 사건에서 특별위원회는 진행되는 절차, 결과 및 모든 사항의 본질을 전제로 비용을 동등하게 분배하였다.⁵⁹⁾ 또한 *Amco II* 위원회는 양 당사자들이 위원회와 협조하는 과정에서의 자기 규제 및 성실성 등의 정도가 같기에 비용을 동등하게 분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⁶⁰⁾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고, ICSID 비용은 동등하게 부담할 것을 명령하는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6) *Libananco Holdings Co. Limited v. Republic of Turkey*, ICSID Case No. ARB/06/8, Decision on Applicant'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May. 7, 2012, paras. 5-6.

57) *Ibid.*, para. 17.

58) 강병근, 전게서, p. 244.

59) 앞의 *Klöckner* 사건, para. 180.

60) 앞의 *Amco II* 사건, para. 10.01.

반면 다른 당사자의 제반 비용까지 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할 때, 특별위원회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Azurix* 사건에서 특별위원회는 취소결정에서 진 당사자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제반 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취소결정에서 진 당사자가 비용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⁶¹⁾ 또한 *Sempra* 사건의 특별위원회도 ‘패소한 자가 지불한다.’(loser pays)는 원칙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각 당사자의 대리인 관련 비용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ICSID 비용까지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⁶²⁾ 끝으로 *MCI Power* 사건의 특별위원회는 취소절차는 상소의 특별한 수단이기예, 중재의 정상적인 연속과정으로 고려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취소가 기각되면 신청인은 비용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MIC와 *New Turbine*이 취소절차의 모든 비용과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⁶³⁾

IV. 취소결정

1. 취소결정의 요건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은 ICSID 협약 제52조 제4항에 따라 협약 제48조에 명시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특별위원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ii) 결정문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것에 찬성 투표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iii)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문제를 취급하여야 하고, 또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iv) 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정문에 개인 의견을 부가할 수 있다. v) ICSID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결정문을 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위원회가 취소신청이 된 ‘모든 문제’(every question)를 다뤄야 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한 가지 이상의 취소사유를 근거로 취소신청을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하나의 취소사유를 확인하였을 때, 나머지 사유들을 확

61) *Azurix Cor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12,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1 September 2009), para.374, para.378.

62) *Sempra Energy International v. Argentine Republic (Sempra)* ICSID Case No. ARB/02/16, Decision on the Argentine Republic’s Request for Annulment of the Award, June 29, 2010, para.9.23.

63) *MCI Power Group, LC, and New Turbine, Inc v. Ecuador (MCI power)* ICSID Case No. ARB/03/6, Decision on Annulment, October 19, 2009, para.88.

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아니오'로 귀결될 경우, 특별위원회는 제기된 취소사유를 어떠한 순서로 분석할지, 그 순서가 특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생각건대 협약 제48조가 취소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인 협약 제52조 제4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신청된 모든 문제를 취급하여야 하며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당사자들에 의해 주장된 모든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ICSID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명확하지 않지만 다수의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취소사유를 판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löckner* 사건의 특별위원회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을 근거로 중재판정 전체를 이미 취소하였더라도 사건의 중요성과 ICSID의 첫 번째 취소신청 사건임을 고려하여 *Klöckner*가 주장하는 나머지 취소사유들을 계속해서 심리하였다.⁶⁴⁾ 나아가 협약 제52조 제6항에 의해 구성될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위하여 상세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절차에서 제기된 주요 사유들을 심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⁶⁵⁾

또한 *Mitchell* 사건의 특별위원회는 '이유 불비' 및 '명백한 권한 유월'을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제기된 다른 취소사유들을 계속해서 심리하였다. *Mitchell* 특별위원회는 "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된 특정 주장들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심리가 다른 취소사유들을 간단하게 논의할 수 있는 데에 유용하다고 여긴다." 고 언급하였다.⁶⁶⁾⁶⁷⁾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중재판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한 주요 취소사유는 협약 제52조 제1항 ii)의 '명백한 권한 유월', iv)의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 v)의 '이유 불비'이다. 먼저 '명백한 권한 유월'을 취소사유로 하는 사건에서 특별위원회는 판정부가 ICSID 협약이 부여한 권한을 명백히 초과하여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명백히 벗어났다고 결정하였다.⁶⁸⁾

64) 앞의 *Klöckner I* 사건, para.96.

65) *Ibid.*, para.82.

66) *Patrick Mitchell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CSID Case No. ARB/99/7,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Award (1 November 2006), para.48.

67) 취소결정의 구조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는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몇몇 특별위원들은 협약 제52조 제1항의 취소사유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분류하였으며, 다른 위원회들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실제적으로 나누고, 나뉜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실들이 협약 제52조 제1항의 취소사유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CDC Group v. Seychelles*, ICSID Case No. ARB/02/14, Decision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Republic of the Seychelles (29 June 2005);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Decision on Annulment (25 September 2007).

68) *Patrick Mitchell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CSID Case No. ARB/99/7, Decision on

유월, 즉 권한의 초과를 이유로 판정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초과는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명백한’이라는 용어를 ‘분명함’(obviousness)을 나타내는 단호하고 강조적인 용어로 간주하였다.⁶⁹⁾

한편, 중재판정부가 준거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권한의 유월이라고 결정하였는데⁷⁰⁾ 이 때 준거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준거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잘못 적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⁷¹⁾ *MINE* 사건에서 특별위원회는 “준거법의 배제는 준거법을 잘못 적용한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준거법의 잘못된 적용이 명백히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⁷²⁾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i) 판정부가 위반한 절차규칙이 근본적인 것이어야 하고, ii) 그러한 위반이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Vivendi I* 사건에서 특별위원회는 “제52조 제1항(d)의 초점은 ‘절차규칙’에 있다. 즉, 판단의 대상은 판정부가 절차를 진행한 방법이지 판정부의 결정내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⁷³⁾ 절차규칙이 공정성 원칙, 불편부당 원칙, 동등한 대우 원칙 및 항변권 존중 원칙과 같이 중재판정의 무결성을 결정짓는 핵심에 해당할 때 그 절차규칙은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다.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Award (1 November 2006); *Malaysian Historical Salvors, Sdn. Bhd. v. Government of Malaysian*, ICSID Case No. ARB/05/10,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the Award (16 April 2009).

69) *Hussein Nuaman Soufraki v. The United Arab Emirates* (ICSID Case No. ARB/02/7), Decision on Annulment of 5 June 2007, para.39.

70) ‘명백한 권한 유월’은 본안의 문제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러한 주장은 주로 적절한 준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제기되어져 왔다. 협약 제52조 제1항에서는 준거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준거법 규정은 중재합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고, 중재판정부 활동의 한계가 되므로 준거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유월로 간주될 수 있다. 요컨대 적절한 준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ICSID 협약 제52조에서의 독립적인 취소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결정들은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한 준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제52조 제1항 (b)에 따른 ‘명백한 유월’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건도, “ICSID 협약상 취소제도의 성격 및 취소사유에 관한 소고: 명백한 월권 및 이유 미기제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p.1155.

71) *Klöckner Industrie-Anlagen GmbH and others v. United Republic of Cameroon and Société Camerounaise des Engrais, S.A.*, ICSID Case No. ARB/81/2, Decision on Annulment (3 May 1985);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8, Decision on Annulment (25 September 2007).

72) *Maritime International Nominees Establishment v. Republic of Guinea*, ICSID No. ARB/84/4, Decision on Annulment (22 December 1989), ICSID Reports 4, 1997, p.87.

73) *Compañía de Aguas del Aconquija S.A. and Vivendi Universa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2).

또한 그 위반이 중대할 때 즉, '그 절차규칙 위반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혜택이나 보호가 박탈되고' 또는 '판정부의 결론이 그 절차규칙을 준수했다 라면 도달했을 판정과 상당히 다르게 된 경우' 그 위반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⁷⁴⁾

'판정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란 판정부가 판정결과의 이유에 대해 침묵하거나 판정 결과와 완전히 모순되는 이유를 제시한 때를 말한다. 이유 기재의 목적은 판정문을 읽는 사람, 특히 당사자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판정부가 사실적 그리고 준거법적 관점에서 그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반드시 판정에 불만을 가지는 당사자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이유라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어느 정도까지가 수긍할 만한 이유가 될 것인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며, 특별위원회에서 이유가 충분한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되면 중재판정의 본안에 대한 검토가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취소신청과 상소(appeal)의 경계가 흐려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⁷⁵⁾ 이유의 모순은 부적합한 이유의 하나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읽는 이로 하여금 중재판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논리에 의한다면 이유가 결여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⁷⁶⁾

2. 취소결정의 효과

특별위원회가 중재판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결정이 나중에 구성되는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특별위원회가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한 사항에 구속을 받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 취소된 중재판정에 대해서 새로운 판정을 내릴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Anxo* 사건의 두 번째 중재절차에서 인도네시아는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이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구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새로운 중재판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특별위원회가 협약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만 기판력을 갖으며, 무엇보다도 특별위원회는 상소기관이 아니

74)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의 예로는 변론권을 상실한 경우, 증거의 제시 및 사실의 입증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이의제기권의 상실 등이 있다(김용일, "ICSID 중재판정의 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3, p. 213).

75) 강병근, 전제서, p. 269.

76) 이기욱, 전제논문, pp. 73~76 참조.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⁷⁷⁾

요컨대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다루어야 할 ‘분쟁’은 과거 중재판정부에 제기된 원래의 분쟁이고, 이것이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다시 다루어지는 것이다. 중재판정이 일부 취소된 경우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대상은 취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에게 원 중재판정 전체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새로운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판정을 내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이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과거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린 후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도 판정을 내릴 수 있다.⁷⁸⁾

3. 취소결정에 대한 재심

ICSID 협약 제52조 제4항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심지어 특별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명백하게 유월하는 등 협약 제52조 제1항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취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협약 제51조의 수정 신청도 취소결정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⁷⁹⁾ 이와 반대로, 협약 제52조 제4항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오기, 오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를 이유로 취소결정의 보완 또는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약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취소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누락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한 결정문의 어떠한 오기, 오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하여야 한다.

Vivendi I 사건에서, 아르헨티나는 특별위원회가 자신들이 제기한 취소신청 일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결정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대해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취소심리는 취소결정이 아닌 중재판정의 재심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취소결정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요청은 ICSID 체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⁸⁰⁾ 구체적으로 특별

77) *Anco Asia Corporation and others v. Indonesia*, ICSID Case No. ARB/81/1,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16 May 1986), ICSID Reports 1 (1993).

78) 강병근, 전제서, pp. 284~285.

79) C. Schreuer et al, *op. cit.*, p. 1056.

80) *pañía de Aguas del Aconquija S.A and Vivendi Universal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Request for Supplementation and Rectification of its Decision Concerning Annulment of the Award, May. 28, 2003, para.11.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보완 요청은 취소절차에는 관할권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취소결정에 대한 보완은 특별위원회가 수행하지 않는 '취소절차의 예외적인 단계'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⁸¹⁾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에 7가지 중요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매우 심각하여 수정되지 않으면 위 오류들로 인해 취소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ICSID 중재에서 아르헨티나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요청을 반려하며, “협약 제49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의 판정과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대해서 실체적인 수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수정의 유일한 목적은 이미 결정된 사안의 주요 부분을 재심하는 것이 아닌, 오기, 오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⁸²⁾ 심지어 특별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요청 모두를 거절하면서 요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수료와 제반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는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수정 요청이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적합하며 특별위원회 결정의 실체적인 사항들을 재심하려는 시도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⁸³⁾ *Vivendi I* 사건의 특별위원회 결정에 대해 Stanimir Alexandrov는 특별위원회의 이러한 강력한 결정은 이미 판단한 중점 사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다른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⁸⁴⁾

V. 결 론

ICSID 중재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약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소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ICSID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기한은 당사자가 취소절차를 개시하는 것과 관련되며 일단 취소절차가 개시되면 특별위원회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협약에서 기한을 정한 것은 기한이 경과된 후 취소신청이 제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확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81) *Ibid.*, paras.17~19 참조.

82) *Ibid.*, para.25.

83) A. Broches, *op. cit.*, p. 328. (각주 21)

84) S. A. Alexandrov, “The *Vivendi* Annulment Decision and the Lessons for Future ICSID Arbitration-The Applicants Perspective”, in E. Gaillard and Y. Banifatemi(eds), *Annulment of ICSID Award* (New York: Juris Publishing, 2004, p. 121.

다. ICSID 중재규칙 제50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 시 i) 사무총장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것, ii) 취소신청과 관련된 중재판정을 명시할 것, iii) 취소신청 일자를 기재할 것, iv) 협약 제52조 제1항에 제한적으로 명시된 취소신청 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ICSID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 전체에 대해서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무상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중재판정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중재판정의 취소신청 권리 포기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장래에 ICSID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이 있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에 취소신청 권리의 포기를 명시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든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ICSID 외의 다른 기관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ICSID 협약이 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신청 권리의 포기는 명백히 잘못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을 배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의 어느 위원도 판정을 내린 판정부의 중재인이어서는 아니 되며 분쟁 당사국의 어느 국가에 의해 중재위원단으로 지명되지 아니하였어야 하고, 또한 동일한 분쟁의 조정자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이는 중재절차 전체에서 취소절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재판정의 취소를 다루고 있는 ICSID 협약과 ICSID 중재규칙은 특별위원회 위원의 부적격 심사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며, 단지 제52조 제4항에서 “제41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및 제54조와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은 위원회의 절차에 준용한다.”를 규정한다. 결국 제52조 제4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당사자들은 특별위원회 위원의 부적격 심사요청을 제기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의 권한·기능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는 크게 관할권, 임시적 조치, 취소결정, 비용배분 등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는데, 먼저 특별위원회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협약 제52조 제4항의 해석상 협약 제25조의 관할권 규정을 취소절차에 준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할권 결정과 마찬가지로 임시적 조치와 관련하여 협약 제52조 제4항은 협약 제47조를 취소절차에 준용하는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임시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반면 협약 제52조 제4항은 비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협약 제7장을 취소절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비용과 수수료 배분에 관한 결정을 해오고 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는 중재판정 전체 또는 그의 어떠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

한을 갖는다. 또한 원 중재판정뿐만 아니라 취소결정이 내려지고 새로이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도 취소대상이 된다.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중재판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한 주요 취소 사유는 협약 제52조 제1항 ii)의 '명백한 권한 유월', iv)의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 v)의 '이유 불비'이다. 이러한 취소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들은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심지어 특별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명백하게 유월하는 등 협약 제52조 제1항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취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협약 제52조 제4항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오기, 오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를 이유로 취소결정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요컨대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은 올 6월 최종 심리를 앞둔 론스타 사건과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중재인 선정을 마친 하노칼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게 불리한 중재판정이 내려질 경우 유일한 불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취소절차의 각 단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ICSID 협약의 해석에 따른 유의점 제시와 관련 ICSID 사례에 대한 고찰은 한국 정부와 ICSID에 관여하는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장병근, ICSID 중재제도 연구, 법무부, 2006.
- 김상찬, “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 김용일, “ICSID 중재판정의 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3.
- _____, “ICSID 중재판정의 ‘집행정지’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 박건도, “ICSID 협약상 취소제도의 성격 및 취소사유에 관한 소고: 명백한 월권 및 이유 미기재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한국법정정책학회, 2010.
- 오원석·이기옥·김용일, “ICSID 중재의 취소제도에 관한 제 고찰“,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4.
- 이기옥,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5. 2.
- Alexandrov, S. A., “The Vivendi Annulment Decision and the Lessons for Future ICSID Arbitration-The Applicants Perspective” in E. Gaillard and Y. Banifatemi(eds), *Annulment of ICSID Award*, New York: Juris Publishing, 2004.
- Bishop, R. D. & Marchili, S. M., *Annulment under the ICSID Convention*, Oxford, 2012.
- Bjorklund, A. K., “The Continuing Appeal of Annulment: Lessons from Amco Asia and CEM” in T. J. Weiler(e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Leading Cases from the ICSID, NAFTA, Bilateral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London: Cameron May, 2005.
- Born, G. 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ases and Materials*,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2011.
- Broches, A., “Observations on the Finality of ICSID Award”, 6 *ICSID Rev-FILJ.*, 1991.
- _____,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f 1965 Explanatory Notes and Survey of its Application” in A. J. van den Berg.(e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 X V III, 1993.
- Caron, D. D., “Reputation and Reality in the ICSID Annulment Process: Understanding the Distinction Between Annulment and Appeal”, 7 *ICSID Rev-FILJ.*, 1992.

- Delaume, G. R., "The Finality of Arbitration Involving States: Recent Developments", 5(1)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989.
- _____, "Reflec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12(1)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1995.
- ICSID, *History of the ICSID Convention*, Vol. I, ICSID PUBLICATION, 2006.
- _____, *History of the ICSID Convention*, Vol. II, ICSID PUBLICATION, 2009.
- Jacob, K. S., "Reinvigorating ICSID with a New Mission and with Renewed Respect for Party Autonomy", 33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3.
- Koa, C. M.,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and Dispute Resolution: Conciliating and Arbitrating with China Through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24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1991.
- Paulsson, J., "ICSID's Achievements and Prospects", *ICSID Rev-FILJ.*, 1991.
- Reed, L. et al., *Guide to ICSID Arbitration*, Wolters Kluwer, 2011.
- Reisman, W. M., "Reflection on the Control Mechanism of the ICSID System" in E G aillard (ed), *The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Jurist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e*, 2010.
- _____, "The Breakdown of the Control Mechanism in ICSID Arbitration", *Duke Law Journal* 739, 1989.
- Schreuer, C. H. et al., *The ICSID Convention: A Commentary on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Stevens, M., 'The Power of ICSID Ad Hoc Committees to Order Security When Granting a Stay of Enforcement' in R. Doak Bishop(e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gainst Sovereigns*, New York: Juris Publishing, 2009.
- Suárez Anzorena, C. I., "Vivendi v. Argentina: on the Admissibility of Requests for Partial Annulment and the Ground of a Manifest Excess of Power" in E. Gaillard and Y. Banifatemi(eds), *Annulment of ICSID Awards*, New York: Juris Publishing, 2004.
- Verhoosel, G., "Annulment and Enforcement Review of Treaty Awards: To ICSID or Not to ICSID?" in 50 years of the New York Convention: ICCA International Arbitration Conference, *ICCA Congress Series No 14, A J. van den Berg.*(ed), Alphen aan den Rijn: Kluwer International Law,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Annulment Procedure of ICSID Arbitral Awards

Yong-II KIM

This article examines the Annulment Procedure of ICSID Arbitration Award. Although the ICSID annulment procedure is not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arbitration procedure, it does have certain unique features. Article 52 of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must be made within 120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award was rendered. ICSID Arbitration Rule 50, in turn, stipulates that a request for annulment of a award must: i) be addressed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ii) identify the award to which it relates; iii) indicated the date of the application; and iv) state in detail the grounds for annulment on which it is based. The grounds for annulment are limited to those in Article 52(1) of the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possibility of waiving the right to annulment in advance, commentators are divided. Some authors admit the possibility of agreements eliminating the right to request annulment. Other authors, instead, have taken the position that parties cannot waive their right to annulment in advanced because no provision in the Convention allows the parties to do so, and thus the right to request annulment is inalien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2(4), annulment decisions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awards stipulated in Article 48. Therefore: i) the committee decide questions by majority; ii) the decision must be in writing and must be signed b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who voted for it; iii) any member of the committee may attach his individual opinion to the award; and iv) ICSID must not publish the decis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Finally, under Article 52(4), parties are not allowed to request the interpretation, revision, or annulment of a decision on annulment. Even if the committee allegedly manifestly exceeded its powers or engaged in any conduct sanctioned by Article 52(1), the parties cannot request the annulment of the decision on annulment.

Keywords : ICSID Convention, ICSID Arbitral Awards, Ad hoc Committee, Annulment Procedure, Annulment Decisions.